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 안 번 호 제 3368호

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23. 11. 16. 배 강 민 의원

1. 심사경과

○ 본 안건은 2023년 11월 16일 배강민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○ 2023년 8월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(약칭: 청탁금지법 시행령)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'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 확대' 및 '선물 등의 가액 범위' 변경 사항 등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(청탁금지법 시행령) 별표 1, 별표 2 적용 개정(안 제11조, 안 제14조)
- 별표 1(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 등의 가액 범위), 별표 2(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) 삭제

4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별첨자료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 별표1 및 별표2를 삭제하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향후 상위법령 개정에 자동 연동되도록 함. 이는 자치입법의 체계적합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.

5. 별첨자료

○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개정 내용

구분
선물 범위 확대
농수산물· 농수산가공품 가액 상향

변경 전		변경 후
■ 선물 : 물품만 가능	•	■ 선물 : 물품 + 물품·용역상품권 ※ 금액상품권(백화점상품권 등) 제외
■ 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 : <u>10만원</u> 이하 ※ 설날·추석 기간 : <u>20만원</u> 이하	} ▶	■ 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 : <u>15만원</u> 이하 ※ 설날ㆍ추석 기간 : <u>30만원</u> 이하